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93

발의연월일: 2021. 2. 25.

발 의 자:이형석·조오섭·문진석

송갑석 · 이용빈 · 윤영덕

이병훈 • 이수진 • 임호선

양기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은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도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실제로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의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 하급기관의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적으로 협의회와 기관장 간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이회·연합회의 주요 행사 등은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직 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의2 신설, 제6조제2항 등).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를"을 "협의회·연합회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기관 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회·연합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협의회는"을 각각 "협의회·연합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의회·연합회의 활동) 협의회·연합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 1. 협의회 연합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협의회가"를 "협의회·연합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와"를 "협의회·연합회와"로,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연합회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연합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를 각각 "협의회·연합회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①・② (생 략)	제2조(설립)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환
	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독자적
	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
	당 상급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u>④</u> 협의회·연합회를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	제5조(협의회・연합회의 기능) ①
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	<u>협의회·연합회는</u>
항을 협의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	② <u>협의회·연합회는</u>
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	
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	
여야 한다.	
<u><신 설></u>	제5조의2(협의회 • 연합회의 활동)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저은 <u>협의회가</u>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u>협의회와</u>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u>최대</u> 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기관장은 <u>협의회의</u>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u>협</u>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저에 관한 세부사항) <u>협</u>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u>협</u>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u>협</u>의회의 협 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의회 • 연합회의 활동은 근무
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
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 • 연합회와 기관장과
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
세6조(기관장의 의무) ①
<u>협의회·연합회가</u>
② <u>협의회·연합회와</u> -
<u>이 행 하</u>
<u>\alpha \circ \circ}</u>
③ <u>협의회·연합회의</u> -
 레7ㅈ/첨이처. 여하치이 그서 미
세7조(<u>협의회·연합회의</u>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
_
<u>의회·연합회의</u>
<u>협의회·연합회의</u>
<u>협의회·연합</u> 히이
회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정한다.